

[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조건]

제1조(조건내용)

본 사용조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.

제2조(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기준 불포함)

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광진구민 공동시설로 해당 주차구획을 개인이 사유화하여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(사업)의 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.

제3조(사용기간)

정기배정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며 수시배정의 경우 배정일로부터 정기배정의 만료일까지입니다.

제4조(이용요금 및 시간)

구 분	전 일	주 간	야 간	비 고
이용요금	월40,000원	월30,000원	월20,000원	거주자우선주차 노외주차장의 경우 10,000원 추가
이용시간	24시간	09:00~18:00	18:00~익일09:00	

제5조(이용방법)

지정된 주차구획에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능하며 지정 시간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(단속대상)

제6조(주차 차량파손 등의 책임)

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(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)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. 또한 식재, 전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낙하물 및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구획의 위치변경은 여분의 구획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.

제7조(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책임)

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제8조(사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)

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미 통보에 의한 불이익은 귀책사유 이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. (차량변경시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만 변경가능)

제9조(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에 따른 조치)

이용 중인 배정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며 도로·교통여건 및 관련 법규 등 제반사정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체주차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권은 자동 소멸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됩니다.

제10조(IoT센서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도에 관한 사항)

IoT센서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도 이용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본인의 차량 미 주차 시간에는 공유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(월 최소 10시간 이상 개방)
2. IoT센서 설치 구역은 해당 공유 플랫폼을 통한 개방만 가능합니다.

제11조(사용의 취소)

다음 각 호의 경우 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1, 3, 4호에 따라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시점부터 2년간 배정이 제한됩니다.

1.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·양도·대여 등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경우
2.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
3.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4.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, 타 차량의 주차 및 교통흐름에 방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신청 확인사항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, 허위 기재·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